

2017년 귀속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



- 1. 근로와 세금
- 2.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할 서류
- 3. 이걸 땐 공제 증명서류 챙길 필요가 없어요!
- 4.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로 증명서류 수집을 간편하게!
- 5. 부양가족의 자료제공동의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b. 근로자의 '편리한 연말정산,서비스
- 7. 회사의 연말정산 유형에 따른 공제자료 제출 방법
- 8. 연말정산 세액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 9.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요건
- 10. 주요 소득공제와 세액감면 · 공제가 어떤 것이 있나요?
- II. 연말정산 결과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12. 소득·세액공제를 누락한 경우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 13. 연말정산 시 절세 Tip은?
- 14.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시 유의할 사항은?
- 15. 더 궁금한 연말정산! 어디서 해결하나요?





○ 1 │ 근로와 세금



| | 2017년 | | | | | | | | 201 | 8년 |
|--------|--|--|--|--|--|--|----|-----------|--------------------|----|
| 1월 | 열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 | | | | 1월 | 2월 | | |
| 19,520 | 19,520 19,520 19,520 19,520 19,520 19,520 19,520 19,520 19,520 19,520 19,520 19,520 19,520 | | | | | | | | | 1 |
|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월 근로소득세액 납부 (연간 234,240원 납부) | | | | | | | | 연말정 결정 200,0 | 세액 |
| | 예시) 월 급여액 200만원(부양가족 없는 경우) : 월 19,520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지방소득세 1,950원 별도) | | | | | | | 34,2 환 | | |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세를 어떤 기준으로 징수하여 납부하나요?

-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합니다. 간이세액표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액을 급여수준 및 공제대상 가족수별로 계산하여 산정한 표입니다.
 -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회 :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근로소득간이세액표

매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를 선택할 수는 없나요?

- >>> 연말정산 결과 환급금 및 추가납부액의 규모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매월 납부할 소득세를 간이세액표 금액의 80%, 100%, 120%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선택이 없을 경우 100% 적용)
 - ☞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에 기재하여 회사에 신청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올해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로서, 원천징수의무자 (회사)가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매월 급여 지급시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이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연간 근로소득세액보다 많은 경우 많이 낸 세금은 돌려주고, 적게 낸 경우에는 추가 납부합니다.

연말정산 후 환급세액 또는 추가납부세액 발생 사유

>>> 연말정산 시 근로자가 제출한 서류 등에 의해 인적공제 대상 부양가족과 소득·세액공제 금액이 정확히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중도퇴직자 및 이중 근로자 연말정산

- >> 12월 말 최종 근무지에서 전(종)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전(종)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 징수부 사본을 발급받아 현(주)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02 D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할 서류



| | 제출 서류 | 제출 대상자 | | |
|-----------------------|---|---|--|--|
| (가족관계 | 주민등록표등본 미확인 시'가족관계증명서') |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는 근로자 | | |
| | 득·세액공제 증명서류 자료 및 영수증 수집 자료) | 연말정산을 하는 모든 근로자 | | |
| <u>-</u> | 소득 · 세액공제신고서 | 연말정산을 하는 모든 근로자 | | |
| 소득 |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 공제 명세서' | 퇴직연금·연금저축 세액공제, 주택마련 저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 | | |
| 모드 세액 공제 신고서 | '월세액·거주자간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 월세액 및 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는 근로자 | | |
| 선고지 부속 | 의료비지급명세서 |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근로자 | | |
| 서류 | 기부금명세서(기부금영수증) |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는 근로자 | | |
|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 | | |
| 전(종)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조드 팀지다 또는 2이사 취내이 그므다 | | |
| 근무지 |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 중도 퇴직자 또는 2이상 회사의 근무자 | | |

☞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및 해당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 본인에 대한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및 표준세액공제 (13만원)만 적용

연말정산 기초서류인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어디서 수집하나요?

-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수집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간소화로 제출되지 않은 자료의 경우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수집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개통: '18.1.15.부터 서비스 가능
 - ☞ 연말정산간소화[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홈택스의「편리한 연말정산」을 활용하면 쉽게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부속 서류 등을 조회·출력·온라인 제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자료는 직접 입력하여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 ☞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편리한 연말정산
- >> 인터넷을 이용한 첨부서류 발급
 - ☞ 주민등록표등본 : 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
 - ☞ 가족관계등록부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 ☞ 건물등기부등본: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이럴 땐 공제 증명서류 13 청길 필요가 없어요!



>> 총급여액에서 공제 증명서류가 없더라도 자동으로 공제되는 항목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표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 공제)만으로 결정세액이 없는 근로자는 별도의 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시) 부양가족 수에 따라 결정세액이 없는 자》

| 인적공제 | 독신 | 2인 가족 | 3 인 가족 | 4인 가족 |
|---------|------------|------------|---------------|---------------|
| 가능 가족 수 | (본인) | (본인, 배우자) | (본인, 배우자, 자) | (본인, 배우자, 자2) |
| 연간 총급여액 | 1,408만원 이하 | 1,623만원 이하 | 2,499만원 이하 | 3,083만원이하 |

>> 연말정산 관련 용어정리

| 용 어 | 설 명 | | | | | |
|------|--|--|--|--|--|--|
| 총급여액 | ○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은 봉급·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총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으로 과세대상급여를 말함 | | | | | |
| 소득공제 |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하여 과세대상소득(총급여액) 중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함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가 있음 소득공제는 공제금액에 해당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세율을 곱한 만큼 세금감소 효과가 있음 (예시)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는 경우 세율이 6%인 경우: 90천원(150만원×6%)의 세액감소 효과 | | | | | |
| 과세표준 |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계산됨 | | | | | |
| 세 율 | 과세표준 구간 세율 산출세액 계산 1,200만원 이하 6% 과세표준의 6%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15% 72만원+1,200만원 초과 15%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4% 582만원+4,600만원 초과 24% 8,800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 35% 1,590만원+8,800만원 초과 35% 1억5천만원 초과~5억원 이하 38% 3,760만원+1억5천만원 초과 38% 5억원 초과 40% 17,060만원+5억원 초과금액의 40% (예시) 과세표준 4,000만원인 경우: 72만원 + (2,800만원×15%) = 4,920,000원 | | | | | |
| 세액공제 |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에서 세액감면을 공제한 후특정목적에 따라 세법에서 규정한 세액만큼 공제하는 것을 말함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등이 있음 세액공제는 공제금액이 세금감소액임 (예시) 의료비 공제대상금액이 300만원인 경우 → 300만원 × 15% = 450,000원(세액공제) 공제대상금액에서 세액공제율을 적용한 45만원이 세액감소 효과 | | | | | |
| 부양가족 |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등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함(직계존속, 직계비속(입양자), 형제자매, 수급자, 위탁아동) 다만,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나,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고, 직계 비속 · 입양자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양가족에 해당함 | | | | |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로 ☐ 4 │ 증명서류 수집을 간편하게!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란?

은행, 학교, 병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전산파일로 제출한 소득 :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국세청에서 전산구축하여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구 분 | 공제항목 | | | |
|----------------|--|--|--|--|
| 공적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 | | |
| 보장성보험료 | 성 보험료 일반보장성보험료,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 | | |
| |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 | | |
| | 약국에 지출한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 비용 | | | |
| 의료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지출한 본인 일부부담금 | | | |
| | 시력보정용 안경구입비용 | | | |
| | 보청기·장애인보장구·의료용구 구입(임차) 비용 | | | |
| | 초·중·고, 대학(원)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 | | |
| | 유치원 교육비 | | | |
| ⊐ОШ | 취학전 아동의 보육시설·학원·체육시설 교육비 | | | |
| 교육비 | 장애인특수교육비 납입금액 | | | |
| |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용, 초·중·고등학생 체험학습비 | | | |
| |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 | | |
|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전통시장 사용액, 대중교통 이용분 구분 표시) | | | |
| 주택자금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 | |
| 주택마련저축 | 주택청약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 | | |
| 연금계좌 |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 | | |
| 7151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금액 | | | |
| 기타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 기부금 | | | |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받은 내역이 실제와 다르거나. 자료 제공이 되지 않은 공제 증명서류는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소득 · 세액공제 증명서류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이용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의료비 세액공제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1월 15일부터 1월 18일까지 해당 의료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홈택스(신청/제출 → 연말정산간소화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 센터)를 통해 신고
- ▶ 접수된 자료는 국세청이 의료기관에 확인하여 자료제출을 재차 요청 하며, 의료기관이 자료를 추가 제출할 경우 근로자는 1월 20일부터 변경된 자료를 조회할 수 있음
 - ☞ 다만, 의료기관이 자료를 1월 18일까지 제출하지 않아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을 경우 의료기관으로부터 직접 증명자료를 수집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함



소득 : 세액공제자료 조회하기

-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기
- ☞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사용가능한 공인인증서는 어떤 것이 있나요?

- ⇒ 주민등록번호 발행 공인인증서: 범용인증서, 인터넷뱅킹용 인증서, 홈택스 전용 인증서, 행정전자서명인증서(GPKI), 교육기관전자서명인증서(EPKI)
- >> 소득·세액공제자료 조회·출력하기
- 홈택스 메뉴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조회/발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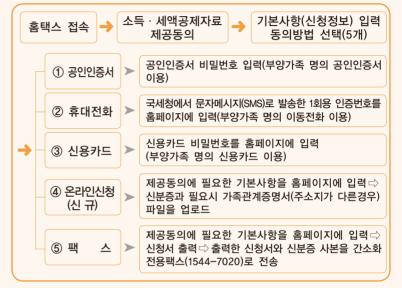
-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 이용시 주의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① 소득 · 세액공제 요건 충족여부를 스스로 확인해야 합니다.
 -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하여 각종 공제자료를 단순히 보여주기만 하므로 구체적인 공제 대상 여부·한도 등 공제요건은 근로자가 직접 확인
 - ② 전체자료 중 근로제공기간만 자료를 활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 과세기간 중 입사 또는 퇴사하는 근로자는 주택자금·주택마련저축·신용 카드 등 소득공제 항목과 보험료·의료비·교육비세액공제 항목들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 동안 사용 및 납입한 금액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1년간 전체 자료를 활용하시면 안됨
 - ③ 부양가족의 자료 조회는 부양가족 본인의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 ☞ 부양가족이 동의하면 근로자는 가족의 공제 자료에 대해 조회 가능
 - 19세 미만(1999.1.1. 이후)의 자녀는 동의절차 없이 「미성년자료조회신청」 후조회 가능
 - ④ 조회되지 않는 공제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야 합니다.
 - 역말정산간소화에 수집되지 않는 자료(보청기 구입비용,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비용, 시력보정용 안경·콘텍트렌즈 구입비, 중고생 교복·체육복, 취학전아동 학원비, 기부금 등)는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수집해야 공제가 가능



부양가족이 「성인」인 경우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당 부양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① 부양가족이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동의신청 방법(5개 방법 중 택일)
- ☞ 홈택스 ⇨ [신청/제출] ⇨ 연말정산간소화 ⇨ 자료제공동의 ⇨ 제공동의 본인인증 신청



② 부양가족이 세무서 방문 동의신청

해당 부양가족(신분증 사본 및 신청인과 신청인의 소득·세액공제를 조회하는 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이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소득·세액공제 정보제공 동의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됩니다.

- ☞ 소득·세액공제 정보제공 동의 신청 시 동의범위를 '2017년 이후 연도자료'를 선택 하시면 부양가족 본인이 기존의 동의를 취소하지 않는 한 추후에는 별도의 제공 동의 절차 없이 계속 조회가 가능
- ③ 부양가족이 모바일로 동의 신청

해당 부양가족이 모바일 홈택스 앱(App)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전화 인증 방법으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자료조회자(근로자)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자료제공 동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앱(App) ⇒ 연말정산 제공동의신청 ⇒ 본인인증 ⇒ 자료조회자 입력

부양가족이 「미성년자」 자녀인 경우

부양가족이 만 19세 미만(1999.1.1. 이후 출산)인 자녀의 경우 별도의 동의절차가 없더라도 「미성년자료조회신청」에 등록하면 해당 자녀의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 [신청/제출]

□ 연말정산간소화

□ 자료제공동의신청

□ 미성년자료조회신청



소득ㆍ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신청 진행 상황 조회

팩스신청 또는 온라인신청(파일제출) 방법으로 부양가족의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한 경우 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자료제공동의 ⇨ 제공동의 민원처리현황

>> 팩스신청

팩스신청인 경우 신청방법을 팩스신청으로 선택하고 접수번호와 제공 동의자(부양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처리담당자와 처리상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팩스 전송 일정시간 경과 후 처리담당자 조회 가능

>> 온라인신청(파일제출)

온라인신청인 경우 신청방법을 온라인신청으로 선택하고 자료조회자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제공동의자(부양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처리담당자와 처리상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와 부양가족이 같은 주소가 아닌 경우에는 양자의 관계가 표시된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전송해야 함

>>> 모바일신청

모바일신청인 경우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서 신청하기 때문에 즉시 제공 동의 신청이 완료됩니다.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 현황조회 및 취소

근로소득자 본인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자와 본인 자료를 제공받는 자를 조회할 수 있고, 추후 부양가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자료제공동의□ 제공동의 현황조회 / 제공동의 취소 신청

소득 · 세액공제자료 삭제 신청

근로소득자 및 부양가족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본인의 소득·세액공제 자료에 대해 정보 제공을 원하지 않는 경우 소득·세액 공제 항목별, 발급기관별 또는 개별 건별로 자료 삭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 [신청/제출]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자료 삭제 신청

□ 근로자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 손쉽게 증명서류를 수집하는 방법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 >> 국세청이 증명서류 발급기관으로부터 소득 ·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수집, 홈택스를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하여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
- ≫ 이용방법 : 홈택스(http://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연맠정산간소화

- >> 매년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11월에 알려주어 연말까지 결제수단 선택 등을 통한 절세계획 수립을 도와주는 서비스
- ≫ 이용방법 :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 미리보기

♪ 언제, 어디서나 공제항목 등을 확인하는 방법 ⇒ 모바일 연말정산

- ≫ 각종 소득 · 세액공제 항목에 대한 공제 요건 · 방법과 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절세주머니」와「대화형 자기검증」을 이용
- >>>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고 싶은 경우「간편계산기」와 「부양가족 없는 근로자 예상세액 계산하기」를 이용
- » 과거에 신고했던 연말정산 정보가 궁금하다면「3개년 신고내역 조회」와 「기부금명세서 조회」를 이용
- ** 간소화자료 제공동의를 간편하게 신청하려면 「자료제공동의신청」을 이용

□ 연말정산 결과를 사전에 확인하고자 할 때 ⇒ 연말정산세액 자동계산

- 근로자가 간소화서비스에서 선택한 공제자료 또는 이미 자동 작성된 공제신고서를 활용하여 연말정산 예상 환급(추가납부)세액을 자동계산*
 * 총급여액, 기납부세액 등은 근로지의 추가 입력 필요
- >> 이용방법: 홈택스 ☞ 모의계산 ☞ 연말정산세액 자동계산

➡ 맞벌이 근로자가 절세방법을 알고 싶은 경우 ⇒ 맞벌이부부 절세 가이드

- >> 부양가족 선택 방법을 변경하여 맞벌이 부부의 세부담 합계가 최소화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모의계산 기능
- » 이용방법: 홈택스 ® 연말정산(아이콘) ® 편리한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를 누락하여 환급받고자 할 때 ⇒ 경정청구 자동작성

- >> 기존에 신고된 연말정산 신고내용을 미리 채워 제공하고 수정항목만 입력하면 경정청구서 자동작성 및 환급세액 자동 계산
- » 이용방법 :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경정청구 작성
 - * '12년 ~ '16년 귀속분 이용 가능('17년 귀속분은 '18년 7월 제공 예정)

○ 7 회사의 연말정산 유형에 따른 공제자료 제출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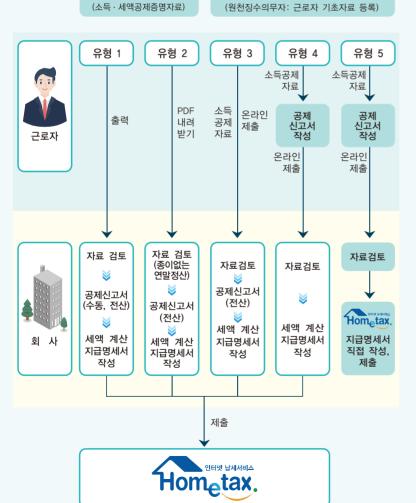


| 구분 | 이용 대상자 |
|-----|--|
| 유형1 | 근로자로부터 간소화의 공제 증명자료를 출력받아 해당 자료를 이용하여 연말정산하는 회사(가장 보편적으로 이용) |
| 유형2 | 근로자의 간소화 공제 증명자료(PDF파일)를 회사의 연말정산 프로그램에 업로드하여 연말정산하는 대기업 및 국가기관 등("종이없는 연말정산") |
| 유형3 | 근로자로부터 공제 증명서류를 홈택스 온라인으로 수집하는 회사 |
| 유형4 | 홈택스에서 근로자가 작성한 소득 · 세액공제신고서와 공제 증명서류를 온라인으로 수집하는 회사 |
| 유형5 |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업무(공제 증명서류 수집,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수집, 지급명세서 제출)를 전부 처리하는 회사(프로그램 유지·보수비용 절감) |

※ 유형 3·4·5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가 이용 가능

〈근로자〉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근로자 + 원천징수의무자〉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연말정산 세액계산은 이떻게 하나요?



| 총급여 | | 총급여 연봉(급여+상여+수당+인정상여) - 비과세소득 | | | | | |
|----------------------|--------------------------------------|---|-------------------|---|--|--|--|
| (-) 근로소득공제 | | | | | | | |
| 근로소득금액 | ~ |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1명당 연 150만원 공제) | | | | | |
| (-) 인적공제 | - | 경로우대· | | 가공제 인ㆍ부녀자ㆍ한부모 | | | |
| (-) 연금보험료공제 | - | 국민연금보험료 | . 등 | 공적연금 보험료 납부액 | | | |
| (-) 특별소득공제 | 건강보험료 등, 주택자금(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 | | | | |
| (-) 그 밖의 소득공제 | |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주택마련저축,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우리사주조합출연금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 | | | |
| (+) 소득공제 한도초과액 | - | | | | | | |
| 종합소득 과세표준 | | 과세표준 구간 1,200만원 이하 | 세율 6% | 산출세액 계산 과세표준의 6% | | | |
| (x) 기본세율 (6%~40%) | | 1,200~4,600만원 4,600~8,800만원 8,800~1억5천만원 1억5천만원 초과~ | 15% 24% 35% | 72만원+1,200만원 초과 15% 582만원+4,600만원 초과 24% 1,590만원+8,800만원 초과 35% | | | |
| 산출세액 | | 5억원 이하 5억원 초과 | 38% 40% | 3,760만원+1억5천만원 초과 38% 17,060만원+5억원 초과금액의 40% | | | |
| (-) 세액감면 및 공제 | | 세액감면(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등)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기본공제대상자녀, 6세이하, 출산·입양)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납세조합공제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월세액세액공제 | | | | | |
| 결정세액 | | | | | | | |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요건



| | | | 공 제 | 요 건 | | |
|-------------|-----------------------|----------------------|-------------------|-----------------------|---------|----------------------------------|
| | 구 분 | 나이요건* | 소득요건* | | 요건 | 비고 |
| | | 기에파트 | | 주민등록동거 | 일시퇴거 허용 | |
| | 본 인 | X | X | X | | |
| | 배 우 자 | X | 0 | X | | |
| | 직계존속 | 60세 이상 | 0 | △ (주거형편상 별거 허용) | | 1957.12.31. 이전 |
| 기 본 |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 20세 이하 | 0 | Х | | 1997. 1. 1. 이후 |
| 공 제 |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 Х | 0 | Х | | |
| | 형제자매 | 60세 이상 20세 이하 | 0 | 0 | 0 | 1957.12.31. 이전 1997. 1. 1. 이후 |
| | 국민기초생활보장 법에 의한 수급자 | × | 0 | 0 | 0 | |
| | 위탁아동 | 18세 미만 | 0 | | | |
| | 장 애 인 | | | | | |
| 추 | 경로우대 | 기본 | 1947.12.31. 이전 | | | |
| 가 공 제 | 부 녀 자 | 배우자가 부양가족 여성 근 | | | | |
| | 한 부 모 | 배우자가 없는 | | | | |
| 6 | 금보험료 공제 | 공적연금보험 | 험료의 근로자 | 본인 납입분단 | 반 공제 가능 | |

*나이요건: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 제한 없음, 당해 과세기간 중 공제기준일이 해당하는 날이 있는

*소득요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 | 구 분 | | 상자의 요건 | 근로기간 지출한 | 비고 | |
|-------------------|---------|---------------------------------------|----------|----------------------|--|--|
| | | | 소득요건 | 비용만 공제 | -, - | |
| 특 별 소 득 | 보 험 료 | 근로자 본인 | 부담분만 공제 | ∥ 가능(건강·. | 노인장기요양・고용보험료) | |
| 조 득 공 제 | 주택자금공제 | _ | - | 0 | 본인만 가능 | |
| 그 밖의 | 개인연금저축 | 근로자 본인 | 인 납입분만 공 | 제 가능(배우 | 자, 부양가족 납입분 제외) | |
| 소 득 | 주택마련저축 | | 세대주인 근로 | 자 본인 납입 | 분만 공제 가능 | |
| 공 제 | 신용카드 등 | X | 0 | 0 | 형제자매 제외 | |
| 자니 | | 0 | 0 | - | 기본공제대상 자녀 (입양자·위탁아동 포함, 손자녀는 제외) | |
| 연금기 | 계좌세액공제 | 근로자 본인 납입분만 세액공제 가능(배우자, 부양가족 납입분 제외) | | | | |
| | 보장성보험료 | 0 | 0 | 0 | | |
| | 의 료 비 | X | X | 0 | | |
| 특 별 세 액 공 제 | 교 육 비 | X | 0 | 0 | 직계존속 제외 *장애인특수교육비는 소득요건제한 없으며, 직계존속도 가능 | |
| | 기 부 금 | X | 0 | Х | 기본공제대상자 (나이요건 제한 없음) *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 조합기부금은 본인만 가능 | |
| #4 | 준세액공제 | 특별소득공기 | | 제, 월세액세9 세액공제(13만 | 백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난원) 적용 | |

주요 소득공제와 세액감면· 공제가 어떤 것이 있나요?



인적공제

| 항목 | 구 분 | 공제한도 | 공 제 요 건 | | | | | | | |
|--------|------|-----------|--|-----------------|-----------------|-----|--------|------------|------------|--------|
| | | |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연간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 | | | | | | |
| | 기본공제 | 1명당 | 부양가족 | 직계존속 | 직겨 | 비비속 | 형제자매 | | 위탁아동 | 수급자 |
| 인 | 기단이세 | 150만원 | | | 60세 20세 | | 18세 미단 | <u></u> 없음 | | |
| 적 공 | | | *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 제한 없음 | | | | | | | |
| 제 | | 대상별 차이 | 공제대상 | 경로우다 (70세 이성 | | 장이 | 네인 | | 년 양/기혼) | 한부모 |
| | 추가공제 | | 공제금액 | 100만원 | 100만원 200 | | 만원 50 | |)만원 | 100만원 |
| | | | * 한부모 공제 적 | | 녀자 [.] | 공제오 | 중복 | ¦적용 | 배제(중 | 복시 한부모 |

연금보험료 및 특별소득공제

| 항목 | Ŧ | 그 분 | 공제한도 | 공 제 요 건 | | | |
|-----------|------------------|-----------------------|----------------------------------|---|--|--|--|
| 연금 보험료 | | | | 본인이 부담한 국민연금 또는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보험료 | | | |
| | 건강 · 고용 보험료 | | 전 액 | 본인 명의의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및 고용 보험료 | | | |
| | | 주택 임차 차입금 | 연 300만원 한도 | | 두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 공제 축 공제와 합하여 연 300만원 한도 | | |
| | | | | | 주택 보유 세대주의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장기 금의 이자상환액을 100% 공제 | | |
| 특 | | | | 차입시기 | 공제한도 | | |
| 별 소 득 공 제 | 주 택 자 금 |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 연 300만원 ~ 1,800만원 한도 | '15.1.1. 이후 | · 15년 이상(고정금리 and 비거치식 분할상환 1,800만원,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상환 1,500만원, 기타 500만원) · 10년 이상(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상환) : 300만원 | | |
| | | | | '12.1.1.이후 | · 비거치식 및 고정금리(1,500만원), 그 외(500만원) | | |
| | | | | '11.12.31.이전 | · 상환기간 15년(1,000만원), 30년(1,500만원) 종전규정 적용 | | |
| | | | 한도 내 이월액 | '13년 이전 지출한 지정기부금 중 5년 내 이월된 공제 한도 내 기부금 | | | |

그 밖의 소득공제

| 항목 | 구 분 | 공제한도 | 공 제 요 건 |
|---------------|---------------------------------|---------------|---|
| | 개인연금 저축 | 연 72만원 한도 | 개인연금저축('00.12.31 이전 가입)의 경우 납입액의 40% 공제 |
| 그 밖의 소득 | 의 <mark>공제</mark> ^{한도} |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법인 대표자가 노란우산공제에 납입한 금액 * 근로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자는 500만원, 근로소득 금액 1억원 초과자는 200만원의 공제한도를 적용 |
| 공제 | | 연 300만원 한도 |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등에 납입한 금액의 40% 공제 * '14년까지 가입한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자 : 기존 납입 한도로 '17년까지 공제 가능 |

주요 소득공제와 세액감면· 공제가 어떤 것이 있나요?



| 항목 | 구 분 | 공제한도 | 공 제 요 건 | |
|---------------|---------------------|---|---|--|
| 그 밖의 소득 | 투자조합 출자 등 | 근로소득금액의 50%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의 출자·투자금액의10% (100%, 50%, 30%)* 공제 * 벤처기업 등에 직접투자(15백만원 이하분 100%, 5천만원 이하분 50%, 5천만원 초과분 30%)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
| | 신용카드 | Min [300만원, 총급여 20%] + 100만원 (전통시장) + 100만원 (대중교통) |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30%)*를 소득공제 * 신용카드:15%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30% 전통시장, 대중교통비:40% | |
| 공제 | 우리사주 조합 출연금 | 연 400만원 한도 |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우리사주 조합에 출연한 금액 | |
| |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 연 1,000만원 한도 | 고용유지 중소기업의 근로자 임금삭감액의 50% 공제 | |
| | 장기집합 투자증권 저축 | 연 240만원 한도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연 600만원 한도)의 40%를 공제(농어촌 특별세 비과세) | |
| 소득공제 종합한도 | | 연 2,500만원 한도 | 주택자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주택마련저축,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신용카드 등, 투자조합출자 등 (공제율 30%, 50%, 100% 제외), 장기집합투자 증권저축이 소득공제 종합한도 대상 | |

세액감면

| 항목 | 구 분 | 공제한도 | 공 제 요 건 |
|------------------|------------------------------|------------|---|
| 세 액 감 면 | 중소 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연 150만원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청년과 60세 이상인 사람, 등록 장애인(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14,1,1,), 경력단절여성('17,1,1, 이후)이 중소기업에 '12,1,1부터 '18,12,31,까지 취업하는 경우 중소기업체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취업일부터 3년간 70%(50%, 100%)* 세액감면 * 70% 감면비율 적용대상자 - 2016,1,1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한 29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여성('17,1,1, 이후) * 50% 감면비율 적용대상자 (한도 없음) - 2014,1,1~2015,12,31,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한 29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 100% 감면비율 적용대상자 (한도 없음) - 2012,1,1~2013,12,31,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한 29세 이하 청년 |

세액공제

| 항목 | 구 분 | | 공제한도 | 공 제 요 건 |
|-------------|--------------|---------------|----------------------------------|---|
| 세 | 근로소득 세액공제 | | 총급여액 기준 50 · 66 · 74 만원 |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분 55%, 130만원 초과분 30% 공제 ※ 공제한도 : 총급여액 3,300만원 이하(74만원) · 7천만원 이하 (66만원) · 그 외 50만원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 계산 = 근로소득세액공제 × [1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액/ 산출세액)] |
| 액 공 제 | | 기본 공제대상 | 전 액 |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2명 이하 1명당 15만원,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
| | 자 녀 | 6세이하 | 전 액 | 기본공제대상 자녀 중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명 초과 1명당 15만원 |
| | | 출산 · 입양 | 전 액 | 기본공제대상 자녀 중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입양한 자녀가 첫째인 경우 30만원, 둘째인 경우 50만원, 셋째 이상인 경우 70만원 |



| 항목 | 구 분 | | 공제한도 | 공 제 요 건 | | | |
|-------------|---------------|--------|------------------|---|--------------|---|---|
| | | _ | 연금 계좌 | | 연 105만원 | 또는 종합소득금 | 연 700만원 한도, 연금저축은 총급여 1억2천만원 액 1억원 이하 400만원, 초과자 300만원 한도)의 5백만원 이하는15%)를 세액공제 |
| | | 보 | 보 | 장성 | 연 12만원 | 기본공제대상자 | 를 피보험자로 지출한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
| | | 험 료 | 장애인 전용 보장성 | | 연 15만원 | |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지출한 상성보험의 보험료 |
| | | | ① 본인 등 | | 전 액 | | 총급여액 3%를 초과하는 경우 그 공제대상금액의 15% 6)를 세액공제(부양가족의 나이·소득 제한 없음) |
| | | 의 료 | | | 연 105만원 | | ② 〈 총급여액 3% ② ≥ 총급여액 3% |
| | | 비 | | 2) 당가족 | | 공제대상금액 ① - (총급여액 3% - ②) ① + (② - 총급여액 3%) ※ 공제대상금액 한도: 본인 등*(전액), 부양가족(연 700만원) * 본인 등: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난임 시술비 | |
| | | 교육비 | | 학전 ŀ동 | | 교육비 | 보육비용, 유치원비, 학원·체육시설 수강료, 방과후 수업료(교재대 포함, 재료비 제외), 급식비: 1명당 300만원 한도 |
| | | | - | 초 · 중 · !생 | 1명당 45만원 | 지출액의 15% 세액공제 나이제한 없음 (직계존속은 제외) | 교육비, 학교급식비, 교과서대, 방과후학교 수강료(교재대 포함, 재료비 제외), 국외교육비 (국외유학요건 충족 : 고등학생제외), 교복구입비(중·고생 50만원 이내) : 1명당 300만원 한도 |
| | 특 별 세 | | 대형 | 학생 | 1명당 135만원 | | 교육비(사이버 대학 및 학위취득과정 포함), 국외교육비 : 1명당 900만원 |
| 세 | 액 공 제 | | | 근로자 본인 ^{전 액} | | | 학기 이상의 교육과정 교육비, 직업능력개발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
| 액 공 제 | ΛII | | 장애인 특수 교육비 | | 전 액 |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 * 소득금액 제한 없으며, 직계존속도 공제 가능 | |
| | | 기부금 | 정 치 | 10 만원 이하 | | ※공제대상 한도 근로소득금액 100% | 정치자금기부금 10만원 이하분 100/110 세액공제 |
| | | | 자 금 | 10 만원 초과 | | | 정치자금기부금 10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분 15%, 3천만원 초과분 25% 세액공제 |
| | | | 법 | 정 | 한도내 전액 | 근로소득금액 100% | |
| | | | 우리 사주 | | | 근로소득금액 30% | 기부금별 한도내 공제대상금액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분 15%, 2천만원 초과분 |
| | | | 지정 (종교 외) | | | 근로소득금액 30% | 30% 세액공제 |
| | | | | 정 ;교) | | 근로소득금액 10% | |
| | | Ē | 표준세액 공제 | | 연 13만원 |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 하지 아니한 경우 ※ 특별소득공제 등 공제세액이 연 13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도 적용 | |
| | 납세조합 | | | <u> </u> | 전 액 | ¬ㅇ 해당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 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10%를 세액공제 | |
| | 주택자금 차입금이자 | | | | 전 액 | ('95,11.1, ~ '97,12.31, 취득)주택자금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의 30% 세액공제 ※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 |
| | 외국납부세액 | | | 액 | 한도내 전액 | 거주자의 외국소득세액을 당해연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 공제한도 = 근로소득산출세액 × (국외근로 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 |
| | 월세액 | | 연 75만원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원 가능)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의 10%를 세액공제 | | | |

연말정산 결과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 회사가 연말정산을 종료하고 다음연도 2월분 급여 지급시까지 박급한 '근로소득 원천지수영수증'을 통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첫페이지 하단의 'Ⅲ 세액명세'에서 확인

| | | 구 분 | | ⊚소득세 | ⊗ 지방소득세 | 80 특별세 |
|------------------|-------------|----------------------|-------------|-----------|---------|------------|
| | | ⑦ 결 정 세 | <u>액</u> *1 | 200,000 | 20,000 | |
| 1 | 기 | ④종(전)근무지 | 사업자 등 록 | | | |
| 세 액 명 세 | 납 부 세 | (결정세액란의 | | | | |
| | | 세액을 적습니다) | 번 호 | | | |
| | 액 | ⑦ 주(현)급 | 근무지*2 | 234,240 | 23,420 | |
| | | ⑦ 납부특i | 례세액 | | | |
| | <i></i> ₹ | ㅏ감징수세액(⑺3 − ⑺ |) - 75 - 76 |) -34,240 | -3,420 | |

- *1 ② 결정세액: 연말정산 한 결과 근로자가 납부해야 할 연간 총 근로소득세
- *2 75 주(현)근무지: 해당 근무지에서 매월 간이세액표에 따라 기납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⑦ 차감징수세액」란이 (+)인 경우 「납부할 세금」. (-)인 경우 「환급받을 세금」을 표시함

연말정산 결과 추가납부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여야 하나요?

>>>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낼 세금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에 신청하면 2월분부터 4월분의 급여를 지급받을 때 추가 납부세액을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언제 받을 수 있나요?

>>> 회사는 자금사정에 따라 연말정산 종료 후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국세청에 환급신청하여 환급금을 수령 후 지급합니다. (대부분 3월 말까지 수령 가능)

과거 연말정산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과거연도의 연말정산 신고사항에 대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 ※ 최근 5년간 조회가 가능하며, 2017년 귀속 연말정산 신고사항은 2018년 5월부터 조회가 가능
- ☞ 홈택스(www.hometax.go.kr) ⇒ MyNTS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소득·세액공제를 누락한 경우 12 |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연말정산 시 누락한 소득 ·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없나요?

- >>> 지급명세서를 기한내에 제출한 근로자는 공제사항을 누락한 경우 근로소득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5년 이내 경정을 청구하여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홈택스(www.hometax.go.kr)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경정청구 작성
- ※ 경정청구 대상 연도를 선택하면 지급명세서 내용으로 미리 채워주고 근로자는 수정사항을 입력하면 결정세액까지 자동 계산 · 작성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 이용방법 연도 선택 기신고내용 Pre-filled 자동작성 ◇근로자가 경정청구 ◇누락된 공제항목 ◇청구서 자동작성· 대상연도 선택 환급세액 자동계산 수정
 - >> 또한,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통해 누락된 공제 항목을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홈택스(www.hometax.go.kr)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정기신고 작성)

연말정산 시 소득 · 세액공제를 과다하게 받은 경우 어떻게 하나요?

-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전 단계 과다공제를 받은 항목을 수정하여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과세 표준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 납부하시면 됩니다
 - ☞ 홈택스(www.hometax.go.kr)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정기신고 작성)
-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이후 단계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한 연말정산 수정신고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수정신고하여 추가 납부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시 과다공제를 받은 경우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 >>> 근로자가 실수로 또는 고의로 과다하게 소득·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추가납부할 세액과 별도로 가산세*을 부담하게 됩니다.
 - * 과소신고가산세: 과소신고한 납부세액(또는 초과신고한 환급세액) × 10% 또는 40% 납부불성실가산세: 미납세액 × 경과일수 × 3/10,000(5년 한도)

13 | 연말정산 시 절세 Tip은?



따로 사는 소득이 없는 부모님을 실제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 취업 등으로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 경우에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하고, 배우자의 형제자매(처남, 처제, 시동생, 시누이)도 본인이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 공제는 급여가 많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맞벌이 부부는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 등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을 경우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 보다는 총급여가 많아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배우자가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있는 부모님의 의료비를 부양하는 자녀가 지출한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인 자녀가 소득이 있는 부모님과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라면 나이 또는 소득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및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는 경우에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의 원금과 이자에 대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항목을 지출 시 결제수단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를 잘 선택하면 절세 할 수 있습니다.

» 의료비와 학원비의 경우 현금으로 결제 시 의료비 세액공제와 교육비 세액공제만 받을 수 있으나, 신용카드 등(직불카드·현금영수증이 더 유리)으로 결제 시 의료비 세액공제와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외에 별도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보다는 직불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면 절세 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적용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 사용분은 15%, 직불카드 · 현금영수증 이용분은 30%를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되도록 직불카드 · 현금영수증을 이용하시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분은 40% 공제율 적용)
 □ 총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로 사용하고 초과하는 금액은 직불카드 · 현금 영수증 사용이 더 효과적임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은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경우 절세할 수 있습니다.

- » 일정금액 이상 사용해야 하는 조건*이 있는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고 공제받게 되면 공제대상 금액이 커져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 *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사용해야 공제 가능

혼인·이혼·별거·취업 등으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부양가족을 위해 그 사유 발생 전에 지출한 보장성보험료·의료비· 교육비 지출액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 근로자가 부양하던 배우자·부양가족 등이 연도 중에 부양가족 요건을 상실*하는 경우에도, 그 이전에 이미 지급한 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에 대해서는 공제 가능합니다.
 - * (예) 딸이 출가하여 사위의 공제대상이 된 경우, 자녀·배우자가 취업하여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한 경우 등

14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시 유의할 사항은?



부양가족 공제

- 이혼한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며느리, 사위,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조카, 사촌,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부양을 하더라도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공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해당 과세기간에 퇴사한 배우자·양도소득(감면받은 양도소득 포함)이 있는 부모님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공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17.12.31. 현재 주민등록등본표 상 세대별(세대원 포함)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는 공제가 안됩니다.
- 취득 시 기준시가가 4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 공제가 안됩니다.
- 배우자가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은 본인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기본공제대상자 중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공제 대상에 해당 하지 않습니다.
- 맞벌이 부부가 각자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한사람으로 몰아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으로 잘못 기재하여 공제를 받는 경우 안됩니다.
-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액을 세액공제하는 경우 안됩니다.
- 배우자 등 부양가족이 납입한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피보험자)을 위해 지출한 보장성보험료는 세액공제가 안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본인 부담액을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님을 부양하는 1인의 의료비 지출액만 공제 가능)
-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해당 의료비를 보전받는 실손보험금과 사내근로복지기금 · 국민건강보험공단(본인부담상한제)에서 받은 지원금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 본인 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한 대학원 교육비는 세액공제가 안됩니다.
- 비과세 학자금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받은 지원금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 적격 기부금영수증 발급단체가 아닌 자로부터 받은 기부금영수증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본공제대상자가 기부한 단체가 적격 기부금영수증 발급단체인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백지 기부금영수증을 교부받아 근로자가 직접 수기 작성한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올해 중간에 입사 또는 퇴사한 경우

• 과세기간 중 중도에 입사 또는 퇴사한 근로자는 주택자금·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중 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는 근로 제공기간 동안 지급한 비용에 한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공제항목은 해당 과세기간 지출액 전부가 공제대상입니다.

15 더 궁금한 연말정산!



| 정보 유형 | 서비스 조회 경로 | | |
|----------------------------|---|--|--|
| 연말정산 정보 안내 | 국세청(www.nts.go.kr) → 성실신고지원 → 원천징수(연말정산)안내 - 개정세법, 연말정산 동영상 교육 등 | | |
| 연말정산 모바일 서비스 | [국세청 홈택스앱] 1. 대화형 자기검증 2. 연말정산 간편계산기 3. 부양가족 없는 근로자 예상세액 계산하기 4. 간소화 자료제공 동의 신청 5. 연말정산 절세주머니 6. 연말정산 3개년 신고내역 7. 기부금명세서 조회 | | |
|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 | 국세청(www.nts.go.kr) → 국세정보 → 국세청발간책자 → 분야별해설책자 → 소득세 | | |
| 연말정산 세액 모의계산 | 홈택스(www.hometax.go.kr) → 모의계산 → 연말정산 자동계산 | | |
| 과거 원천징수영수증 조회 | 홈택스(www.hometax.go.kr) → MyNTS → 지급명세서등 * 과거 5년간 조회 ('16년 귀속분은 '17년 5월부터 조회 가능) | | |
|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 하는 간이세액 조회 | 국세청(www.nts.go.kr) → 성실신고지원 → 원천징수(연말정산)안내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 |
|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 전통시장 여부 조회 |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 |

연말정산 상담 서비스

| 인터넷 | ○ 국세상담센터 : 홈택스(www.hometax.go.kr) → 상담/제보 → 자주묻는 상담 사례 등 ○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txsi.hometax.go.kr/docs/main.jsp) | | | | |
|-----|---|---|--|--|--|
| 전화 | ○ (국번없이) 126 (내선 2~3번)연말정산 세법상담 (내선 1~5번)연말정산간소화 상담 (내선 1~1번)현금영수증 상담 (내선 1~3번)지급명세서 상담 | (내선 5-1번) 홈택스 연말정산서비스 이용방법 문의 (내선 5-2번) 연말정산 세법 상담 | | | |
| | ○ 전국 세무서 → 연말정산 상담 | | | | |
| 방문 | ○ 전국 세무서 국세청(www.nts.go.kr) → 국세청 소개 → 전국세무관서 | | | | |